

#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9. . .  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구미시립도서관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며 강당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, 불명확한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도서관 이용시 정치·종교관련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3조)

-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, 강연, 모임
-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

나. 도서관 강당 사용시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기한 규정 (안 제4조제1항)

- 현행 : 사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
→ 개정 : 사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·조정 할 수 있다.

-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전일까지로 규정

## 3. 조 례 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구미시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조례 제 호

##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, 강연, 모임 등을 위한 경우

7.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

제4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·조정 할 수 있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2조에 의해 허가받은 사용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사용허가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,<br>1. ~ 5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사용허가 제한) -----<br>-----<br>-----<br>1. ~ 5. (현행과 같음)<br><u>6.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, 강연, 모임 등을 위한 경우</u><br><u>7.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도서관 강당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<br>1. (생략)<br>2. 사용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<br><br>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-----<br>----- <u>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·조정 할 수 있다.</u>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제2조에 의해 허가받은 사용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도서관법」

제33조(사용료 등)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### □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35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,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.

| 소과 실 · 과    |       | 시립중앙도서관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관 장   | 배 영 숙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우 춘 근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신 수 진<br>(480-4652) |